

진단·평가 신청 및 정보공개 동의서

소 속	초등학교	학년	반
학 생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년	월	일
장애유형 및 등급	※복지카드에 기재된 내용으로 적어주세요		
보호자 연락처			

진단평가 일자 및 시간(8, 9월 중)			
월 일 ()요일			
<input type="checkbox"/> 10:30~11:30	<input type="checkbox"/> 10:30~11:30	<input type="checkbox"/> 10:30~11:30	<input type="checkbox"/> 10:30~11:30
<input type="checkbox"/> 11:30~12:30	<input type="checkbox"/> 11:30~12:30	<input type="checkbox"/> 11:30~12:30	<input type="checkbox"/> 11:30~12:30
<input type="checkbox"/> 13:30~14:30	<input type="checkbox"/> 13:30~14:30	<input type="checkbox"/> 13:30~14:30	<input type="checkbox"/> 13:30~14:30
<input type="checkbox"/> 14:30~15:30	<input type="checkbox"/> 14:30~15:30	<input type="checkbox"/> 14:30~15:30	<input type="checkbox"/> 14:30~15:30
<input type="checkbox"/> 15:30~16:30	<input type="checkbox"/> 15:30~16:30	<input type="checkbox"/> 15:30~16:30	<input type="checkbox"/> 15:30~16:30

※ 검사참여 인원이 많아 일정조율이 어렵습니다. 참여 가능한 시간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 청각 및 시각장애, 지체장애, 의사소통장애의 경우 2시간 소요 예정이니 2시간 연속으로 표시해주세요.
 ※ 학습장애의 경우 3시간 소요 예정이니 3시간 연속으로 표시해주세요.

본인은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2024 중입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담당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수집이용목적 : 2024 중입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 수집항목
 - 기본정보 : 소속, 이름, 학년, 생년월일, 성별, 보호자의 이름과 연락처
 - 민감정보 : 복지카드 장애유형 및 등급, 발육 및 건강상태, 학업성취수준, 행동특성 및 요인, 사회생활적응능력, 의사진단서 등
- 이용 및 보유기간 : 2024 중입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업무 종료 시(2024.2.29.)까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2024 중입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참여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

보호자 : _____ (인)

학생과의 관계 : _____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제16조)

* 선정·배치 절차

<p>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14조 제3항)
↓	
<p>2) 접수 및 진단평가 회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4항)
↓	
<p>3) 진단평가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	
<p>4) 진단평가결과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 제2항)
↓	
<p>5)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법 제15조 제2항)
↓	
<p>6)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6조 제3항)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법 제17조 제1항)